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767호 2013년 4월 18일(목)

조 례

-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2
- 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 4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2013년 4월 18일

속초시조례 제2318호

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다문화가족 모국(친정)방문 지원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(생략) 1. ~ 7. (생략) 〈 신설 〉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	제4조(지원사업) (현행과 같음)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다문화가족 모국(친정)방문 지원사</u> <u>업</u> 9. (현행과 같음)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

2013년 4월 18일

속초시조례 제2319호

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”를 “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도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도로법」 제76조에 따라”로, “부담금 징수에 관하여”를 “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호 중 ““도로”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”를 ““도로”란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와 제8조에서”로, “일체”를 “모두”로 하고, 같은조 제2호 중 “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”을 ““도로복구공사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호 중 ““직접손해부분이라 함은”을 ““직접손해부분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조 제4호 중 ““간접손해부분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간접손해부분”이란”으로, “추후에 손해가 예상되어”를 “나중에 손해가 예상되거나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이외의 공사”를 “이외의 공сна 행위”로 하고, 같은항 “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제목 “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”을 “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”라고 하고, 같은조 제1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, “반환”을 “환급”으로 하고, 같은항 제1호 중 “당초”를 “처음”으로 하고, “필요하지 않을”을 “필요하지 아니하게 된”으로 하고, 같은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인정 할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초”를 “처음”으로 하고, “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”을 “허가면적을”이라 하고, “추징하여야”를 “추가 징수 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.

제6조 제목 도로법 제76조 “복구공사의 시행”을 “복구공사 시행”으로, 같은조 제1항 중 “시장이 일괄적으로 시행한다”를 “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”로, 같은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

다만,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시행할 수 있다.

같은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고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조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.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8조제1항의 “행위로 인하여”를 “행위로”하고 “긴밀한 협조로”를 “긴

밀히 협조하여” 로 하며,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손괴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.

제9조의 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” 를 “조례 시행에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속초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로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도로”라 함은 <u>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부속물,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.</u> 2. “도로복구공사”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 3. “직접손괴부분”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 4. “간접손괴부분”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<u>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</u> 제3조(원인자 부담금 징수) ①시장은 도로공사 <u>이외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	<u>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도로법</u>」 제76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원인자와 손괴자로부터 <u>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도로”란 「<u>도로법</u>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와 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 부속물, 공작물 등 <u>모두를 말한다.</u> 2. “도로복구공사”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. 3. “직접손괴부분”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. 4. “간접손괴부분”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<u>나중에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.</u> 제3조(원인자 부담금 징수) ① 시장은 도로공사 <u>이외의 공로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제76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</u>

② (생략) ③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)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반환</u> 할 수 있다. 1.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2. (생략) 3.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<u>추징하여야</u> 한다. ③ <신설>	제5조(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)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<u>환급</u> 할 수 있다. 1.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<u>추가 징수하여야</u> 한다. 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제6조(복구공사의 시행)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<u>시장</u>이 일괄적으로 시행한다. 다만,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의 각호 및 제24조의5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의 경우 원인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1. 도시가스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.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	제6조(복구공사 시행) 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<u>원인자가 직접</u>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<u>속초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</u> 시행할 수 있다. <삭제> <삭제>

3.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와
같은법 같은조 제8호 및 같은조 제10
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중
관경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관로시설

4.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
발전소 상호간, 변전소 상호간, 또는
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,000볼트 이
상의 송전시설

5.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
신회선설비중 외접관경이 3미터이상
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 선로
설비

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
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
검사는 시장이 한다.

③ <신설>

④ <신설>

③ (생략)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
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. 이 경우 도
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「지방자
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
률 시행규칙」 제68조 별표1 에 의거 준
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
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0조에 규정된
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
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
률」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
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손괴자 확인의뢰)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<u>행위로 인하여</u>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<u>긴밀한 협조로</u>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손괴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.	제8조(손괴자 확인의뢰)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<u>행위로</u>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<u>긴밀히 협조하여</u>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 손괴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.
제9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의 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2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 시행에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